# FACT SHEET (Korean – Public Charge)

5/25/99

## 정부 구호대상자 설명서

공중 위생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클린튼 행정부는 비시민이 미국 입국, 적법 영구주민 신분 조정, 그리고 국외 추방 수속 시 "정부 구호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채 공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제안 규정을 5월26일 연방 관보에 공표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들은, 처음으로 "정부 구호대상자"를 정의하고 비시민이 부정적 이민 결과를 우려함이 없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부 구호대상자를 결정할 때 필히 고려해야 될 제반 문제점을 기술합니다. 이 정보는 비시민과 그 가족이 어느 특정한 혜택들을 신청할까에 대해 지적 선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또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결정을 촉구함으로써 국가의 이민법 행정을 강화합니다.

### 배경

"정부 구호대상자"는 100년 이상이나 입국 거부와 국외 추방의 근거로서 미국 이민법의 일부이었습니다. 어느 때라도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기 쉬울 것 같은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고 미국의 법적 영구주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입국 전에 존재했던 원인 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지 5년 이내에 정부 구호대상자가 된 외국 남성이나 여성은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정부 구호대상자라는 근거로 국외 추방된 실례는 무척 드뭅니다.

근래의 이민과 복지개혁법은 어느 특정한 연방, 주, 지방의 공공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시민이 그러한 공공혜택을 받았다 해서 정부 구호대상자가 되어 불리한 이민 영향에 직면하게 될까하는 대단한 사회적 혼동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부 비시민과 그 가족이 재난 구제, 전염병 치료, 예방주사, 아동들의 영양 및 보건 계획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공혜택을 스스로 기피함으로써 - 잠재적으로 자신들과 일반 대중에게 대단한 해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건강보험과 건강보호 수혜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전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공공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해를 끼칩니다.

## 정부 구호대상자의 정의

행정부서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초안된 제안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 구호대상자"라 함은 "소득 보조금으로 정부 현금 지원을 받거나, 혹은 정부 비용으로 장기 공공시설에 수용된 것이 밝혀짐으로써 생계 유지를 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된 (국외 추방 수속 시) 혹은 의존하게 되기 쉬운 (입국 혹은 신분 조정 수속 시)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만을 이용하여 한 외국인을 정부 구호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문제점도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민귀화국 (이귀국)은 정부 구호대상자에 대한 이런 정의와 기준을 현지 지침을 통한 협의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침은 제안된 규정과 함께 연방 관보에 공표 될 것입니다. 추가로, 미국 국무성 (국무성)은 해외 미국 영사관에 전보를 보내 입국 수속 시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침이 즉시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이귀국과 국무성은 보건과 다른 중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일반인의 우려를 덜도록 돕고, 아울러 현지 직원이 이민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귀국은 이러한 접근 방법에 관한 일반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60일간의 일반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부 구호대상자로 간주되는 혜택

제안된 규정상 특칭 되는 소득 보조금용 현금 지원이라 함은 추가 안정소득 (추안소),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지원 (임지필가)의 현금 지원, 그리고 주나 지방의 소득 보조금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서 흔히 "일반지원"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공 현금지원을 받고, 또 만일 다른 모든 범주들에 해당되는 (아래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 범주"난에 명시된 데로) 비시민은 정부 구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의료보장을 포함해서 - 요양원이나 정신건강시설 같은 - 장기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공지원 혜택은 이귀국이나 국무성 관리의 정부 구호대상자 분석의 일부로 고려될 것입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공공시설 단기 수용은 정부 구호대상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정부 구호대상자로 간주되지 않는 혜택

소득 보조금용 목적이 아닌 비현금 혜택과 특수목적 현금혜택은 정부 구호대상자 고려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혜택이 포함하는 것은:

국민의료보장
아동 건강보험 계획 (아건보계)
식량 배급표
여성, 유아, 아동 (여유아)을 위한 특별 추가영양 계획,
예방주사,
임산부 보호,
전염병 검사 및 치료,
긴급 의무지원,
긴급 재난 구제,
영양 계획,
주택 지원.
전기 지원,
탁아소 서비스,
수양 자식 양육 및 입양 지원,
대중교통 이용권,
교육 지원,
직장훈련 계획, 그리고
임지필가 계획 기금에 따른 비현금 혜택.

위의 계획 중 일부는 전기 지원, 교통 혹은 임지필가에 따른 현금으로 제공되는 탁아 혜택 혹은 아동보호발전 정액교부금 (아보발정교), 그리고 임지필가에 따른 일시 긴급 지급금과 같이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의 목적은 소득 보조금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보조금용으로 지속적인 현금 지원의 필요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 구호대상자 고려의 근거가 되지 아니합니다.

## 정부 구호대상자 결정의 범주

제안된 규정은 외국인이 단지 소득 보조금용 현금 지원을 받았다 해서, 혹은 장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 남성이나 여성을 입국 거부, 법적 영주민 신분 조정에 부적격, 혹은 정부 구호대상자라는 근거로 국외 추방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법규는 이귀국이나 국무성 관리가 수 개의 추가적 문제점 또한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매 결정은 매 건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입국 및 신분 조정

한 외국인이 정부 구호대상자라는 근거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적법 영구주민 신분 조정이 거부되기 이전에, 그 외국인의 연령, 건강, 가족 상황, 자산, 자원, 재정 상태, 교육과 기능 등 수많은 요인이 이귀국이나 국무성에 의해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 재정보증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요구되었다면 - 과거 혹은 현재 소득 보조금용 공공 현금 혜택 영수를 포함한 어떤 한 가지 요인만으로 외국인을 정부 구호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국외 추방

이귀국은 혜택 제공 기관의 소득 보조금용 현금 혜택이나 장기 보호시설 수용비의 환불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외국인이 실패한 경우에만 정부 구호대상자임을 근거로 그 외국인을 국외 추방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제공기관이 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위임 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5년 이내에 환불을 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최후 판결을 획득하였고; 그 판결상 모든 수금 절차를 밟았으며; 이러한 모든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만, 이귀국은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해도, 만일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소득 보조금용 공공 현금 혜택을 받았거나 장기 보호시설에 수용되었음이 밝혀질 수 있으면 그 외국인 남성이나 여성을 정부 구호대상자 근거로 추방할 수 없습니다.

## 정부 구호대상자에 대한 다른 해명

귀화를 위한 정부 구호대상자 검사는 없습니다. 정부 구호대상자는 비시민이 친척을 미국에 오도록 보증할 수 있는가에 고려될 요인은 아닙니다. 가족의 한 구성원이 받은 혜택은 정부 구호대상자 수속 시 그 현금 혜택이 가족을 위한 단독적 지원금이 아니었던 한 가족 중 다른 구성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귀국 -